

# 2020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



##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은?

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노무 및 IT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재택근무 제도화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입니다.

특히 컨설팅을 통해 **재택근무제 선도모델**로 성장한 참여기업에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통한 **우수기업 인증** 및 **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**, **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대**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.

사업명	2020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
신청기간	2차) 2020년 8월 19일(수) ~ 9월 29일(화) ※선착순 접수 마감,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아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</li> <li>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사업장</li> <li>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,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</li> <li>2020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</li> <li>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</li> </ol> </li> <li>고용보험에 가입된 지방공공기관 신청 가능(중앙정부기관 제외*)</li> </ul>
비용	★전액 무료지원 (자비 부담 없음)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택근무* 도입 범위 및 운영방식 검토, 적합직무 선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자택 이외의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근무 방식도 포함</li> </ul> </li> <li>운영규정 마련 등 인사·노무관리 체계 구축</li> <li>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사항 자문</li> <li>재택근무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교육</li> <li>재택근무 IT 인프라 구축·활용방안 자문</li> <li>고용노동부(재택근무 간접노무비, 인프라 구축비 지원), 중소벤처기업부(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) 등의 재택근무 관련 정부사업 참여지원</li> </ul>
결과발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 기간 내 수시 발표</li> </ul>



## 신청방법은?

아래의 작성서류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**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**

- **우편접수 :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(044-202-7502, 7497)**  
\* 주소 : (30117)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, 정부세종청사 11동 508호
- **이메일접수 : goodyang11@korea.kr**  
이메일 제출 시 PDF 형식으로 각각의 제출서류를 번호 순대로 파일 생성하여 제출  
\* 파일명 기재: 번호, 회사명, 제출서류명을 기재하며, 신청서의 회사명과 동일하게 작성  
(예시) 1. (주)00산업\_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
- **컨설팅 수행기관은 “한국생산성본부” 선택**

	No.	서류명	서류양식	작성방법 기타
작성 서류	1	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	제1호 서식	작성 및 서명·날인 후 제출 ※ 컨설팅 수행기관 <b>“한국생산성본부”</b> 로 작성
	2	컨설팅 수행계획서	제2호 서식	
	3	노사대표 합의 확인서	제3호 서식	작성 및 서명·날인 후 제출
	4	사업자등록증	-	사본 1부
구비 서류	5	고용보험 완납증명원	-	근로복지공단 문의 또는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발급
	6	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자료	-	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
	7	(선택)정부 주관 우수·인증 증빙자료	-	해당자에 한함

## 컨설팅 프로세스는?

### 기업진단 (1~2주차)

- 재택근무 가능 직무 발굴
- 인사담당자 등 면담, 재택근무 활용 목적 등 명확화
- 노조 면담, 재택근무 도입 관련 근로자 입장 확인
- 간접노무비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계획 수립



### 제도화 지원 (3~4주차)

- 재택근무 실시를 위한 사내 운영규정 마련
- 취업규칙, 근로계약서 개정 지원
- IT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자문
- 정부지원사업 참여 신청



### 재택근무 시범운영 (5~8주차)

- 전직원 대상 재택근무 활용 관련 교육 실시
- 자율적인 조직문화, 관리자 리더십 향상 지원
- 재택근무자 선발, 시범 활용
- 임금·보수 등 성과평가체계 개선 지원



### 사후관리 (9주차)

- 재택근무자, 인사담당자 등 면담, 문제점 도출 유형화
- 추가 개선방안 자문